

의안번호	2219934
의 퇴 인	임종득 의원
회 답 일	2026. 9. 10.
추계번호	26B3590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5조제1항 (산촌진흥특화사업의 수립 등)	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립·시행하는 산촌진흥특화사업 의 범위에 “산촌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·육성사업”을 포함하도록 명시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5조제1항 (산촌진흥특화사업 계 획의 수립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산촌진흥특화사업 범위에 산촌 관광 등 사업 추가(안 제25조제1항)

- 현행법 제22조¹⁾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촌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, 현행법 제25조 및 제27조²⁾에서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

- 1) 제22조(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촌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2) 제27조(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.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.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- 개정안에 따라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에 ‘산촌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·육성사업’을 추가할 경우, 향후 해당 사업의 시행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·융자 시 이에 따른 예산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수립 여부, 사업의 종류·규모, 추진 대상 지역 및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고, 향후 각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세부 특화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예산 소요액이 결정될 사안이므로,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재정부담주체별 재정변동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위진수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위진수	02-6788-4650	wjinsu@assembly.go.kr